#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

의안 번호 1543

제출연월일: 2021. 2. .
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#### 1. 제안이유

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(2019~2022)의 1년 단위 집행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구민의 복지수요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보고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개 요

- 1) 관련 법률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35조
- 2) 계획분야: 커뮤니티케어 생태계 조성,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강화, 보호안전망 확충,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, 보육 및 교육 확대,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강화, 주거지원 확대, 문화여가 확대. 권리증진 등 9개 분야
- 3) 계획대상: 사회적 취약가구 (저소득, 다문화, 어르신, 장애인, 아동·청소년·청년 등)
- 4) 추진방법
  - (1) 2021년도 추진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
    - 해당 사업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
  - (2) 2021년 시행계획 내용 심의 및 확정
    -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
  - (3)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

나. 계획 주요내용

목차	구 분	내 용
제1장	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	<ul><li>○ 2021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및 변경내용</li><li>○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</li><li>○ 계획 수립 TF 구성・운영 계획</li></ul>
제2장	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	○ 이행점검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성 및 계획 ○ 결과확인(자체평가) 모니터링 평가체계 구성 및 계획
제3장	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·행정 계획	<ul> <li>재정 지원 및 세부사업 예산 투입계획</li> <li>조직개선 계획 및 인력 운용관리 개선 계획</li> <li>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</li> <li>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</li> </ul>
제4장	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	<ul><li>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</li><li>지역주민 참여도 활성화와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</li></ul>
 참고1	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목록	ㅇ 사회복지, 보건분야 전체사업 294개 사업
붙임1	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	<ul><li>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</li><li>9개 분야 78개 세부사업</li></ul>
붙임2	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	ㅇ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변경내용

다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###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약칭: 사회보장급여법)

[시행 2017.9.22.] [법률 제14696호, 2017.3.21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급여기준과) 044-202-3144

#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

####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

- 제35조(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(이하 "지역사회보장계획"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21.>
  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지역사회 보장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,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·군·구 의회의 보고(보고의 경우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)를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21.>
  - ③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)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·군·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21.>
  -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3.21.>
  - ⑤ 시·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3.21.>
  - 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.>
  -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(이하 "지역사회보장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수 있으며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.>
  -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.>
  -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3.21.>